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6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 차등 적용하던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앞으로는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적용하고, 보상금의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하여 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처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4항 중 “제77조제1항 단서”를 각각 “제77조제2항”으로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보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1.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2.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③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④ 개별 부패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0조제2항 후단 중 “제77조제1항 단서”를 “제7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일부·추가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7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일부 지급을 우선 결정한 경우에는 제7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 ② (생략) ④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제1항 단서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조제1항 단서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80조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는 “제79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할 때”로 본다. ⑤ · ⑥ (생략)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④ ----- ----- 제77조제2항 ----- ----- . ----- 제77조제2항 ----- ----- ----- ----- ----- ----- ----- ----- ----- ----- ---
제77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보 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7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보 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1.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개별 부패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③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④ 개별 부패행위로 인하여 산

제80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u>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u>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0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제77조제2항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7752